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52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O 전자문서의 접수통지 근거 규정을 "법 제9조제2항"에서 "법 제9조제4항"으로 변경함(안 제18조2)
- 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 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과 같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전자문서의 접수통지)	제18조의2(전자문서의 접수통지)
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전자	법 제9조제4항
문서 접수사실의 전자적 통지	
는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u>.</u>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사법지	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1578